
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10] <개정 2019. 12. 20.>

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(제43조 관련)

1.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

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

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=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×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

가. 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.

<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>

연료명	면지			황산화물			질소산화물		
	난방	산업	발전	난방	산업	발전	난방	산업	발전
등유 (황함량 0.001%)		0.05	0.05		17.0S		2.16	2.16	2.16
등유 (황함량 0.1%)		0.24	0.24 0.07 <sup>1)</sup>		17.0S		2.40	2.40	2.40 14.7 <sup>1)</sup>
경유(황함량 0.1, 0.05%)		0.24	0.24 1.67 <sup>2)</sup>		17.0S		2.40	2.40	2.40 53.4 <sup>2)</sup>
B-A유		0.84	0.84		5.28		5.99	5.99	5.99
B-B유		1.20	1.20		14.3S		2.47	2.47	2.47
B-C유(황함량 0.3~4.0%)		1.1S+0.39	1.1S+ 0.39		14.3S		6.64	6.64	6.64
무연탄		5.0A	5.0A		19.5S		5.83	5.83	9.00
유연탄		5.0A	5.0A		19.0S		4.55	5.55	7.50
액화천연가스 (LNG)		0.03	0.03		0.01		3.70	3.70	6.04 42.9 <sup>2)</sup>
액화석유가스 (LPG)		0.07	0.07		0.01		2.18	2.28	2.28

비 고 : 1. A(회분함량) : 무연탄(40%), 유연탄(10%)의 회분함량 값은 각각 40, 10임

2. S(황함량) : 등유(0.1%), B-A유(1.5%), B-B유(1.2%), 무연탄(0.7%), 유연탄(0.5%)의 황함량 값은 각각 0.1, 1.5, 1.2, 0.7, 0.5임

3. 배출계수단위 : 유류(g/L), 석탄(g/kg) 액화천연가스(g/m<sup>3</sup>), 액화석유가스(g/kg)

4. 환산계수 : 액화천연가스(1kg=1.238m<sup>3</sup>), 액화석유가스(1kg=1.97L=0.529m<sup>3</sup>)

5. 주 1) : 가스터빈

주 2) : 내연기관

나. 가목 외의 연료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2. 실측에 의한 방법

가.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

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=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× 가스유량

나. 가목에 따른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 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.